

# Centralised Booking Model 적용 가이드라인

## 1. Centralised Booking Model의 개념

- Centralised Booking Model(이하 'CBM')은 **글로벌 은행의 지점·법인\***이 **거래귀속주체**("Booking entity", 이하 'BE') **명의로 FX거래를 수행**하는 모델
  - \* 본-지점간 外 본점-현지법인, 현지법인간, 본점-자회사 등 외환당국이 동일 그룹으로 인정하는 다양한 관계에 적용 가능
  - CBM 하에서 **은행간거래주체**("Trading entity or branch", 이하 TE)는 BE의 고객을 상대로, **BE를 대신하여 FX거래만 수행**(TE의 BE 거래)
    - \* 'TE의 BE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거래는 이하 'TE 거래'로 표현.
    - FX 거래의 체결(Deal-Booking), 확인(Deal-Confirmation), 결제(Settlement) 등 **전반의 절차는 모두 BE 이름으로 이뤄짐**
  - **대고객거래주체**("Sales entity or branch", 이하 'SE')는 장부기장(Booking), 확인, 결제, 은행간시장 거래 등을 하지 않고 **단순 영업행위**(대고객거래)만 수행

## 2. CBM의 적용 범위 (☞ [참고 1])

- ① **(RFI 등록 단위) CBM 하에서 지점·법인이 BE의 장부로 거래를 수행** 하는 경우 해외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지점별 RFI 등록이 필요** 하며, **미등록 지점의 영업행위는 무등록 영업행위**로서 제재 대상
  - 단, **SE의 경우** BE의 RFI 등록 신청·변경시 해당 지점·법인의 목록을 **사전에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추가 등록의무 면제**
    - \* BE의 RFI 등록신청·변경시 모든 SE 명단을 첨부

< CBM에서 각 주체별 역할 >

구분	BE	TE	SE
Booking	본인 명의로 가능	X	X
Trading	본인 명의로 가능	BE 명의로 가능	X
Sales	본인 명의로 가능	BE 장부기장만 가능	BE 장부기장만 가능
RFI 등록	각 지점·법인별로 등록		조건부 면제

- ② **(신용공여 약정)** CBM 하에서 'TE의 BE 거래'시 TE는 BE 이름의 Credit Line을 공유하여 사용 가능
- ③ **(거래 체결 및 확인)** CBM 하에서 'TE의 BE 거래'시 BE 이름으로 거래 체결(Deal-Booking) 및 확인(Deal-Confirmation) 가능
- TE가 BE 고객과 거래 후, BE 이름으로 바로 기장(Booking)이 실행 되는 경우에만 해당
  - 고객과 TE 또는 SE 이름으로 기장(Booking)하고 해당 포지션을 BE 장부(Book)간 직거래(Back-to-Back)로 넘기는 경우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음
- ④ **(결제)** CBM 하에서 'TE의 BE 거래'시 BE 이름의 업무용 외화계좌 및 원화계좌를 통해 결제 가능
- 'TE의 BE 거래'만 수행하는 TE의 RFI 등록시에는 TE 명의의 별도 업무용 원화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음
  - 'TE 본인의 거래'를 위해서는 TE가 명의의 별도 업무용 원화계좌를 통해서만 결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RFI 등록 취소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 \* TE가 자기 이름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 업무용 계좌 개설 등 BE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을 모두 충족하여 변경 등록 필요
- ⑤ **(보고)** CBM 하에서 'TE의 BE 거래'는 BE 책임 하에 BE 이름으로 보고. 단, TE의 BE 거래를 BE 대신 TE가 보고하는 것도 가능
- RFI 등록시 사업계획서에 보고 방식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 보고방식을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 (예) 외국인 투자자가 Sales Entity(방콕 지점)를 통해 Booking Entity(런던) 이름으로 거래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포지션을 Trading Entity(싱가폴 지점)가 은행간시장에서 Booking Entity(런던) 이름으로 거래한 경우  
⇒ 대고객거래, 은행간거래 보고기관과 취급점포를 모두 "런던 지점"으로 보고
- ⑥ **(외국환중개사 계약 단위)** CBM 운용 범위에 따라 상이
- 'TE의 BE거래'만 수행하는 지점의 경우 외국환중개회사와 BE 단위에서의 계약 외 지점 단위에서의 별도 계약은 필요하지 않으며, 은행간 시장에서도 BE 이름으로 거래하여야 함
  - 'TE의 본인 거래'를 위해서는 BE의 외국환중개회사와의 계약과는 별도로 지점 단위에서 추가 계약(그룹 차원에서의 통합 계약\* 등은 가능)을 맺어야 하며, 은행간 시장에서도 TE 이름으로 거래를 수행해야함
  - \* 단, 거래 내역이 중개회사 시스템에서 각 RFI별로 식별되어야 함

### 3. 국내 외국환은행에 대한 CBM 적용

- ① **국내 외국환은행**(이하 '서울본점')의 **현지법인·지점**이 서울본점의 장부로 직접 거주자 대상 대고객거래 또는 대고객거래와 관련된 은행간거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예) 국내 외국환은행 A의 런던 지점이 국내 기업 B의 물량을 직접 거래하거나, 가격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RFI로 등록된 현지법인·지점**에서 서울본점의 장부를 운영할 수 있는 **달러\***가 **서울본점의 장부로 포지션 거래**를 하거나, **이종 통화**(예:유로-달러)의 **대고객거래**를 **커버**하는 것은 가능함

\* 이 경우, 해당 달러는 서울본점 또는 현지법인·지점 한 곳의 장부만 운영해야 함

- **현지법인·지점**이 **서울본점의 장부**로 **비거주자 대상 대고객거래**를 하는 것도 가능함

- ② **서울본점과 RFI로 등록된 현지법인·지점**이 **별도의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 외국환중개회사를 거치지 않는 **상호간 직거래** 가능

- 예를 들어, 서울 본점이 **직접 대고객거래**를 완료하고, 포지션 관리를 위해 **서울본점**이 **현지법인·지점**과 하는 거래는 허용됨

### 4. CBM을 도입하지 않는 기관의 거래

- ① **CBM을 도입하지 않는 RFI**는 동일 그룹 여부와 관계없이 RFI 등록시 대행기관에 **각 RFI별로 업무용 원화계좌**를 구분하여 **개설·운용**해야함

- ② **①RFI와 대행기관 간 거래** 및 **②동일 그룹 RFI들간의 거래**는 모든 기관 (대행기관 제외)이 업무용 원화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전제 하에, 외국환 중개회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 가능(24.6월중 「지침」 개정으로 허용 예정)

- ① **RFI와 대행기관 간 직거래**가 가능하나, 동일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지점이 RFI의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거래 불가**

- ② RFI로 등록하여 각각 업무용 원화계좌를 개설한 **A은행 런던지점** (또는 법인)과 **A은행 뉴욕지점**(또는 법인) 간 **원화 직거래** 가능

## 5. CBM 인정을 위한 RFI 등록절차

### ① CBM 적용 지점·법인은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

\*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2-3조(변경 및 폐지)에 따라 Booking Entity 또한 TE의 추가·변경·삭제시 서류제출 필요

- **(등록신청서)** ⑤ 외국환업무의 내용에 **CBM에 적용여부**를 기재하고, 이름을 사용하는 **BE 및 거래범위\*** 명시

\* ①TE의 BE거래, ②TE거래

- **(사업계획서)** TE의 CBM 모델을 상세히 설명하고, **CBM 체크리스트** (참고2)를 추가 작성·제출

- CBM이 적용되는 **지점·법인의 범위, 세부 거래·체결·결제·보고 절차**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② SE의 등록·변경·삭제시에도 BE가 등록신청서 내 '⑤ 외국환업무의 내용'에 SE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

- 명단에 각 **SE의 지점·법인명, 소재국, 주소, 식별번호**(소재국 법인번호, LEI 등)을 반드시 포함

- 필요시 명단은 별지로 작성 가능(등록신청서에 '별지 참조' 명시)

**참고 1**

**CBM의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TE의 BE 거래	TE 거래
RFI 등록 단위	법인·지점별 등록 필수 (단, Sales entity 제외)	지점별 등록 필수
대고객 거래	BE 명의로 거래	TE 및 사전 등록한 SE 고객과만 거래
체결 및 확인	BE 명의로 수행	TE 명의로 수행
외화결제	BE 명의 업무용 외화계좌로 결제	TE 명의 업무용 외화계좌로 결제 (그룹 차원의 BE 명의 통합계좌 등으로도 가능)
원화결제	BE 이름의 업무용 원화계좌로 결제	TE 명의 업무용 원화계좌로 결제
한은 외전망 보고	BE가 보고, BE가 TE와 대행기관에 보고의무 위탁 가능	TE가 보고, TE가 대행기관에 보고의무 위탁 가능
외국환증개회사 계약 및 은행간 거래	BE 단위 계약 외 지점별 계약은 필요없고, 은행간 시장에서도 BE 이름으로 거래하여야 함	BE 계약과 별도로 지점별로 계약 필요, 은행간 시장에서도 TE 명의로 거래하여야 함 * 그룹단위 통합계약 등은 가능

**참고 2****CBM 인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1. Trading Entity : 직접 기입

2. Booking Entity : 직접 기입

3. Sales Entity : 직접 기입

## 4. 체크리스트

항목	답변
1. 거래상대방인 고객과 은행간시장 참여기관과의 거래확인(MT300 등)의 모든 정보가 Booking entity 이름으로 기재되는지?	Y
2. 거래상대방인 고객과 은행간시장 참여기관과의 지급지시(MT202 등)의 모든 정보가 Booking entity 이름으로 기재되는지?	Y
3. Trading Entity는 Booking entity의 Credit Line을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Y
4. 거래상대방인 고객과 은행간시장 참여기관은 Booking entity에 Onboarding되어 있거나, Onboarding할 계획인지?	Y
5. 거래상대방인 고객과 은행간시장 참여기관과의 거래 후, Back-to-Back 없이 Booking entity 이름으로 바로 기장(Booking)되는지?	Y
6. 기타 거래 전반의 과정에서 Trading entity가 계약 또는 법적 책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는 없는지?	N
7. CBM은 인정받아 등록한 Trading entity의 경우에도, Trading entity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참고 1에 따라 거래, 체결·확인, 결제, 보고 등 전반의 절차가 Trading entity 이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Y
8. 상기 7번 항목을 위반한 경우 경고·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뿐 아니라, 심각·중대한 경우 RFI 등록 취소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는지?	Y
9. 필요한 경우 상기 7번 항목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한국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Y
* Trading location, Trader name/location, notional, direction, product type, settlement information, client information(고객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 등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